

식물용 비료 개량제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327577 (2024.05.08.)
- 쟁 점 사 항: USMCA 특혜, USMCA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수출국: 캐나다
- 최종 원산지: USMCA 특혜 및 제301조: 캐나다
USMCA 원산지 표시: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 식물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병원균과 해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비료 개량제		
재료		중국	• 키토산 플레이크
		캐나다	• 물 • 구연산(citric acid) • 젖산(lactic acid) • 안식향산칼륨(potassium benzoate)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키토산 플레이크 생산 Manufacturing ▾  캐나다  STEP 1 키토산 플레이크 수입 STEP 2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 STEP 3 산-염기 반응 STEP 4 기타 물질과 혼합 및 여과 STEP 5 식물용 비료 개량제 완성 Export ▾  캐나다 최종 수출		
상세 공정		중국	• 키토산 플레이크 생산 - 키토산은 새우, 바닷가재, 게 등 갑각류의 외골격에서 얻어지는 키틴에서 유래
		캐나다	• 키토산 플레이크에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 • 젖산 또는 구연산 첨가에 따른 산-염기 반응으로 키토산의 아민 작용기가 R-NH ₂ 에서 쯔비터이온성 아민 형태인 R-NH ₃ ⁺ 로 전환되어 화학구조가 변화하고, 불용성 플레이크가 수용성 액상 형태로 전환 • 캐나다산 물, 구연산, 젖산, 안식향산칼륨 등을 키토산 액체와 혼합 및 여과 • 최종제품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염기 반응에 의해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의 특성이 변형되며, 이러한 반응은 화학 반응에 해당하므로 USMCA에 따른 특혜, USMCA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관세 적용 목적상 원산지가 모두 캐나다라고 주장

《CBP의 판정 ① - USMCA 특혜》

- ⊙ 최종제품 생산을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913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와 최종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제3913호로 동일하므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다만, 제39류 및 제40류의 물품으로서 하나 이상의 USMCA 국가 영역에서 일어난 화학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함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분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다음 사항들은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키토산의 아미노기가 R-NH₂에서 R-NH₃⁺로 전환되는 화학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공정은 화학반응 제외 공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USMC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

→ USMCA 특혜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CBP의 판정 ② - USMCA 원산지 표시》

-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19 C.F.R Part 102에 따른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제3913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국내산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와 최종제품의 HS Code 4단위가 제3913호로 동일하므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 USMCA 원산지 표시 규정상 세트 상품을 제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재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
-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재료가 중국산 키토산이고 해당 키토산이 완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판단되므로,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 USMCA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BP의 판정 ③ - 제301조 적용》

- ⊙ 중국산 키토산 플레이크는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변화하므로, 최종제품의 제 301조 적용 목적 원산지는 캐나다임
 - (명칭) 키토산 플레이크는 비료 개량제로 명칭이 변화함
 - (특성) 젖산 또는 구연산과의 화학반응으로 키토산의 아민 작용기가 R-NH₂에서 R-NH₃⁺로 전환되어 화학구조가 변화하고, 물리적으로도 불용성 플레이크에서 완전히 용해된 액상 현탁액으로 전환됨
 - (용도) 키토산 플레이크는 살균제로서 제한적인 농업적 용도를 가지는 반면, 최종제품은 극심한 고온·저온에서 식물의 생존을 향상시키고 증산작용을 줄이는 등 비료 개량제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용도가 변화함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

IV 시사점

- ⊙ 동일한 물품이라도 USMCA 특혜, 원산지 표시 및 제301조 관세 등 적용 법령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어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 화학제품의 실질적 변형 판단에서 화학반응에 따른 화학구조의 변화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며, 화학반응과 함께 원재료의 명칭·특성·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비료 보조제
사례번호	NY N317486 (2021.03.09.)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에 따른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기타 국가] - 결정성 분말인 NBPT(N-Butylthiophosphoric triamide) 생산 • [캐나다] - NBPT 분말에 특정 용매, 첨가제, 착색제 등을 배합하여 액상으로 전환 - 제품의 물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 수행 - 최종 액상 비료 보조제 생산
신청인 주장	• NBPT는 그 상태 그대로 비료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밀한 배합 및 가공을 거쳐야만 농업용 비료 보조제로서 기능할 수 있음 • 가공을 통해 자극적인 냄새가 완화되고 상온 보관이 가능해짐
판정 결과	• 최종제품의 유효성분은 NBPT 하나뿐이며, 다른 성분은 용매, 첨가제, 착색제 등으로 NBPT의 기능을 보조할 뿐임 • 캐나다에서의 공정을 통해 분말이 액체 상태로 전환되어 보다 쉽게 분산될 수 있게 되지만 유효 성분의 화학적 명칭과 구조는 변화하지 않음 • 즉, 액상화, 분산성 향상, 냄새 완화 등의 변화가 있더라도, 명칭, 특성 및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NBPT의 원산지로 유지됨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과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